

#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90
----------	-----

제출년월일 : 2024. 6.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중인 월곡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4.8.31.)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종사자	소요예산 ('24년기준)	現)위탁기관
					협약기간
월곡청소년 센터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 (하월곡동)	1,463㎡ (지하1층~ 지상3층)	8명	586,181천원(계)  12,684천원(국) 573,497천원(구)	(사)한국청소년재단 (관장:정진희)
					21.9.1.~24.8.31.

###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24.9.1. ~ 2027.8.31.)
- 위탁사무 : 「월곡청소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따른 아동권리 보호 및 참여권 보장
  -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환경 개선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및 여가를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 성북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북 특화 프로그램” 발굴·개발
- 청소년카페, 동아리실등 청소년 휴식·활동을 공간 조성·운영
- 지역 내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정보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그 밖에 성북형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다.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의결 결과 : 적정

###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등)

**제117조(사무의 위임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